

##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『도로법』 제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2일

노 원 구 청 장

1. 공고기간 : 2026. 5. 22. ~ 2026. 6. 5.
2. 공시내용 : 도로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 
반송분 공시송달
3. 공고방법 :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4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

대상자	주소	부과일자	위반장소	체납금액	반송사유
우*균	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*, 2*3동 23*2호(원문동)	2025. 11. 3.	동일로1062	215,600	폐문부재
박*홍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*0, 1*8동 12*2호(마북동)	2025. 11. 17.	상계역 세계로마트 옆	107,800	수취인불명
임*규	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암로25길 1*~1*, 1*9동 16*3호(정릉동)	2025. 10. 20.	노해로460	542,600	폐문부재

5.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(한국은행 제외)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서비스 시스템 <<http://etax.seoul.go.kr>>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중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%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(압류)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(강제징수)에 의거 귀하의 재산(차량 등)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6. 기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경관과(☎02-2116-40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압류예고통지서 1부. 끝.

## 납부 최고 및 압류 예고 안내문

-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- 귀하께 부과한 『도로법』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었기에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오니 고지서 상 납기 내 기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.
- 또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시면 부득이 「지방세징수법」(압류)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(강제징수)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(차량, 부동산, 예금 등) 이 압류됨을 예고하오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체 납 액 : 체납(독촉) 고지서 참조(별도 송부)

(노원구청 도시경관과 ☎ 02-2116-4028)

2026년 5월

노 원 구 청 장